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11일, 문대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4.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대림 의원)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장 등이 이를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 개정안을 2024년 5월에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용이해 졌으나, 항해당직자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분산되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해상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

선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제2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가. 유실 컨테이너 보고 의무 등 신설

현행법상 항행장애물 보고에 관한 규정(법 제24조)은 국제협약상 유실 ‘컨’ 보고에 관한 규정과 보고주체·보고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국제협약 개정안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해 유실 ‘컨’ 보고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하여 국내법이 국제 협약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유실되거나 표류하는 ‘컨’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주변 항행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2조제15호¹⁾에 따르면 항행장애물은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된 물건을 의미하므로, 유실 ‘컨’ 역시 항행장애물에 해당함.

개정안은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유실 ‘컨’에 특화된 보고절차를

1)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항행장애물”(航行障礙物)이란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선박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답은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유실 ‘컨’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 규정 신설

개정안은 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선박 충돌 및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40조의2제2항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18조제2항제1호의3은 관리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